

# 정 관

(2017.12.06. 12차개정)



사회복지법인구세군복지재단

# 목 차

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
- 제2조(명칭)
- 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- 제4조(사업의 종류)

## 제2장 자산 및 회계

- 제1절 자산
  - 제5조(자산구분)
  - 제6조(자산의 관리)
  - 제7조(경비의 유지방법)
- 제2절 회계
  - 제8조(회계의 구분 등)
  - 제9조(회계의 처리)
  - 제10조(회계연도)
  - 제11조(사업계획 및 예산)
  - 제12조(사업실적 및 결산)
  - 제13조(잉여금의 처리)
  - 제14조(예산 외의 채무부담)

## 제3장 임원

- 제15조(이원의 종류와 정수)
- 제16조(임원의 선임)
- 제17조(임원선임의 제한)
- 제18조(인원의 임기 등)
- 제19조(임원의 직무)
- 제20조(대표권의 제한)
- 제21조(임원의 대우)
- 제22조(겸직금지)

## 제4장 이사회

- 제23조(이사회 구성)
- 제24조(의결사항)
- 제25조(이사회 소집 등)
- 제26조(이사회 개의와 의결정족수)
- 제27조(의결권의 대리행사)
- 제28조(의결제적 사유)
- 제29조(이사회 회의록)

## 제5장 수익사업

- 제30조(수익사업의 종류)
- 제31조(수입의 처분 및 관리)

## 제6장 사무조직 및 운영

- 제32조(사무국)
- 제33조(직원)

## 제7장 정관변경 및 해산

- 제34조(정관변경)
- 제35조(해산 및 합병)
- 제36조(잔여재산의 귀속)

## 제8장 공고방법

- 제37조(공고의 방법)
- 제38조(준용규정)
- 제39조(운영규정)

## 제9장 보칙

# 정 관

1977.01.28. 인가  
2017.12.06. 12차 개정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이 법인은 기독교 이념과 구세군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업과 각종 구호 및 봉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(1991.11.18.)(1993.09.13.)(1999.05.29.)

**제2조(명칭)**이 법인의 명칭은 ‘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’(이하 ‘법인’)이라 칭한다.

**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**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9(신문로1가)에 둔다.(2014.09.29.)

1. 수원지부 :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644번지 9(매교동)(2014.09.29.)

**제4조(사업의 종류)**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(1999.05.29.)

1.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(1999.05.29.)
2. 아동직업보도시설 설치 운영사업(1999.05.29.)
3.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에 의한 시설 설치 운영사업(1999.05.29.)(2002.05.02.)
4. 영유아보육시설 설치 운영사업(1999.05.29.)
5. 기술교육시설 설치 운영사업(1999.05.29.)
6. 모자복지시설 설치 운영사업(1993.09.13.)(1999.05.29.)
7. 노인복지시설 위탁운영사업(1999.05.29.)
  - 가) 노인무료의료사업(1999.05.29.)
  - 나)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(2002.03.15.)
8.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(1999.05.29.)
9. 실직노숙자 무료숙박 사업(1999.05.29.)
10. 알콜 마약, 도박 중독자를 위한 재활지원사업(1999.05.29.)(2007.01.18.)
11. 에이즈 예방 및 에이즈 감염인 건강복지 지원사업(2007.01.18.)
  - 가) 에이즈 예방을 위한 교육, 홍보, 상담사업(2007.01.18.)
  - 나) 에이즈 감염인을 위한 복지지원 및 치료시설 설치 운영사업(2007.01.18.)

- 다) 에이즈 감염인을 위한 호스피스 요양원, 컴퓨터 설치 운영사업(2007.01.18.)
- 12. 화장지 제조 판매 수익사업(2007.07.11.)
- 13. 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사업(2015.10.15.)
- 14.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의한 각종 복지사업과 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등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(1993.09.13.)

## 제2장 자산 및 회계

### 제1절 자산

#### 제5조(자산구분)

- ①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,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- ②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  - 1. 설립 당시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
  - 2. 부동산
  - 3.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
- ③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‘별지’1과 같다.

#### 제6조(자산의 관리)

- ①기본재산을 취득, 매도, 증여, 교환, 임대 또는 담보제공하거나 그 밖에 권리의 포기, 의무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세군 국제본영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.
- ②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령과 이 정관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7조(경비의 유지방법)**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, 수익사업의 수익금, 정부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### 제2절 회계

#### 제8조(회계의 구분 등)

- ①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,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- ②법인 일반회계 및 수익사업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하고 시설회계는 그 시설의 장이 각각 집행한

다.

**제9조(회계의 처리)**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 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10조(회계연도)**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**제11조(사업계획 및 예산)**

①이 법인의 이사장은 법인 회계에 속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.

②이 법인의 이사장은 법인회계의 예산이 확정된 후 지체없이 시설회계에 관계되는 예산내역을 당해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시설의 장은 시설회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를 당회 법인의 이사장에게 제출하고 이사장은 이를 회계연도 20일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.

④법인의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사업실적 및 결산)**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이사장이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 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3조(잉여금의 처리)**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익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.(2002.03.15.)

**제14조(예산 외의 채무부담)**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### 제3장 임원

**제15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**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이사장 1인
2. 상임이사 1인(2014.09.29.)
3. 이사 : 8인(이사장과 상임이사 포함)(2014.09.29.)
4. 감사 : 2인(2014.09.29.)

### 제16조(임원의 선임)

- ①이사장과 상임이사, 이사,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(2014.09.29.)
- ②이사 중 구세군 국제본영 대장에 의해 임명된 사령관, 서기장관, 인사국장, 업무국장, 기획국장, 재무부장으로 한다. 시, 도의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시, 군,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한 외부추천이사 2인 포함한다.(2013.09.23)
- ③선임된 임원은 등기 후 주무관청에 보고한다.(2013.09.23)
- ④감사 2인은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, 감사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. 도지사가 추천한 1인으로 한다.(2013.09.23)

**제17조(임원선임의 제한)**이 법인은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3항의 규정에 의한 “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”가 이사 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.(2013.09.23)

### 제18조(임원의 임기 등)

- ①이 법인의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- ②보궐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**이사는 3년, 감사는 2년으로 한다.**
- ③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1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,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.

### 제19조(임원의 직무)

- ①이사장은 사령관직에 있는 이사로 하며 이 법인을 대표하고, 제반사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②서기장관직에 있는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(2014.09.29.)
- ③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  - 1. 이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(2002.03.15.)
  - 2.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(2002.03.15.)
  - 3.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(2002.03.15.)
  - 4.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(2002.03.15.)
  - 5.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(2002.03.15.)

**제20조(대표권의 제한)**이 법인의 이사장 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.

**제21조(임원의 대우)**이 법인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22조(겸직금지)**

- ①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.
- ②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 또는 시설장 및 직원을 겸할 수 없다.

## 제4장 이사회

**제23조(이사회 구성)**

- ①이 법인에 이사장과 상임이사,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.(2014.09.29.)
-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**제24조(의결사항)**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- 1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2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3.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
- 4.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5. 사업계획, 실적 및 예산, 결산에 관한 사항
- 6. 재산의 취득,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7.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
- 8.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9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- 10. 일시 차입금에 관한 사항
- 11.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
**제25조(이사회 소집 등)**

-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-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하고,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.
-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장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### 제26조(이사회 의 개의와 의결정족수)

- ①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 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.
- ③이사회 의결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이를 전결한 후 1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그 사실을 승인 받아야 한다.

### 제27조(의결권의 대리행사)

- ①이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표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②대리인은 다른 이사이어야 하며,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이사의 수는 1인에 한한다.
- ③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8조(의결제적 사유)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- 1.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

### 제29조(이사회 회의록)

- ①이사회 회의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과 참석 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.
- ③이사장은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수익사업

### 제30조(수익사업의 종류)

- ①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(2007.07.11.)
  - 1. 목공예 사업
  - 2. 철구 사업
  - 3. 화장지 제조사업(2007.07.11)
- ②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.

제31조(수입의 처분 및 관리)이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

인의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, 수익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은 법인 도는 그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.(2002.03.15.)

## 제6장 사무조직 및 운영

### 제32조(사무국)

- ①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- ②사무국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### 제33조(직원)

- ①법인 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직원을 둔다.
- ②직원의 임용, 복무, 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## 제7장 정관변경 및 해산

**제34조(정관변경)**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의결을 거쳐 구세군국제본영의 승인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35조(해산 및 합병)**이 법인이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전원의 의결을 거쳐 구세군국제본영의 승인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36조(잔여재산의 귀속)**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구세군국제본영의 승인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.

## 제8장 공고방법

### 제37조(공고의 방법)

- ①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이 법인의 게시판이나 일간신문에 실는다.
- ②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.

## 제9장 보칙

제38조(준용규정)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세군군령군율, 사회복지사업법, 민법, 비송사건절차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관계 법규를 준용한다.

### 제39조(운영규정)

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- ① (시행일)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1991. 11. 18. 인가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③ 1993. 09. 13. 인가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④ 1999. 05. 29. 인가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⑤ 2002. 03. 15. 인가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⑥ 2005. 05. 02. 인가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⑦ 2007. 01. 18. 인가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⑧ 2007. 07. 11. 인가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⑨ 2012. 06. 07.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.
- ⑩ 2013. 09. 23.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.
- ⑪ 2014. 09. 29.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.
- ⑫ 2015. 10. 15.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.
- ⑬(제5조, 제18조의 변경 조문 시행일)2017.12.06.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.